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전부개정일 : 2025.04.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평택대학교 대학원 학칙’(‘학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 대학원의 학사관련 업무는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제2장 입학, 전과 및 전공변경

제3조(지원자격) ① 각 학위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박사학위과정 : 국내 또는 외국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2. 석사학위과정 : 국내 또는 외국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은 자
- ②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신학과(Th.M.) 지원자는 목회학석사과정(M.Div.)을 이수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 ③ 각 대학원별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구비서류) ①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입학원서 1부.
2.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기타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재직 및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 필요한 서류
- ② 제1항의 구비서류는 필요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전형방법) ①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1. 전공과목에 대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2. 구술(면접)시험 : 전공의 연구능력, 적성, 인격, 사명감 등의 심사
3. 출신 대학 및 대학원의 성적 : 출신 대학 및 대학원의 전 학년 평점평균을 백분율로 환산한 성적
- ② 제1항의 입학전형에서 필요한 경우 각호의 전형 중 일부전형을 면제할 수 있으며 전형요소별 배점 및 환산점수, 최저점수, 합격기준 등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기 따로 정한다.

③ 합격기준은 배정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점수 합산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정원제 운영 시 원활한 학과 운영을 위해 학과 합격 인원을 안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④ 학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합격사정) 합격여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입학허가와 입학취소) ① 합격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입학이 허가된다.

② 졸업증명, 성적증명 등 제출서류에 학력위조, 허위증명 등의 허위사실이 확인이 되면 입학을 취소한다.

제8조(편입학) ① 편입학 자격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편입학 가능학과 학점인정 범위는 [별표 1]에 정하며 편입학 전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에 편입학을 지원할 경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④ 모집 시기는 신입생 모집에 준하여 결정하고 구비서류 및 전형방법은 제4조, 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재입학) ① 재입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본교에서 제적된 자로 제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재입학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입학을 허가할 때에는 이미 이수한 학점수에 따라 재입학 학기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서(소정의 양식)

2. 제적 전 성적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제적 후 타교에 재학 중인 자

2. 재학연한 경과로 학적을 상실한자 및 중도 수료자

3.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4. 성적이 불량하여 성적취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재입학 후 재학연한까지 학업을 계속하여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이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제적 시점의 학과 및 전공이 재입학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⑥ 재입학은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허가한다.

⑦ 영구수료특례재입학 및 논문포기대체학점(재학연한이 초과하지 않은 수료자 해당)의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제6장, 제7장에 따른다.

제10조(전과 및 전공의 변경) ① 전과 및 전공의 변경은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다음 학기에 적용한다. 영구수료특례재입학자나 논문포기대체학점(수료자)의 경우는 허가하지 않는다.

② 전과 및 전공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취득 평점평균이 3.0이상 이어야 한다.

③ 전입은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전출은 입학정원의 10% 이상일 때에는 학과성적순에 따라 전출을 인정한다.

④ 전과 및 전공변경은 편입학 전형 전에 우선하여 시행하며, 이미 취득한 성적에 의하여 전형한다.

⑤ 편입학생의 전과 및 전공변경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⑥ 전과 및 전공변경 지원 전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한다.

⑦ 전과 및 전공변경 하고자 하는 학과 및 전공의 관련과목을 인정한다.

⑧ 전과 및 전공변경 한 자는 성적인정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졸업학점을 전과 및 전공변경한 학과 및 전공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 및 학적

제11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해당 학기의 학생 자격을 얻는다.

제12조(논문연장자, 수료연구생 및 수료생)

① ‘논문연장자’라 함은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소정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하는 해당 학기에 논문연장등록을 한 학생을 말한다.

② ‘수료연구생’이라 함은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소정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준비하며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학기에 수료연구등록을 한 학생을 말한다.

③ ‘수료생’이라 함은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소정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수료연구생 또는 논문연장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을 말한다.

제13조(정규등록, 연구등록 등)

① 등록은 정규등록,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② 학생은 전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매 학기 학교가 정하는 소정 기간 내에 정규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수업연한 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재학 연한 내에서 수료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등록은 논문연장등록과 수료연구등록으로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논문연장등록 :

- 각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소정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수료하였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논문연장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당해 학기에 소정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 논문연장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당해 학기 수업료의 10%를 논문연장등록금으로 납부를 하여야 한다.

- 논문연장자 신분은 논문연장등록을 한 당해 학기만 유지되며, 논문연구등록 후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2. 수료연구등록 :

- 각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소정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연구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준비하며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학기에 연구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수료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수료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수료연구생 신분은 수료연구등록을 한 당해 학기만 유지되며, 수료연구생 신분 유지를 위해선 매 학기 수료연구등록을 해야한다.

④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연구등록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 재학연한 내에서 학위취득때까지 논문연장등록은 1회 완납으로 한다.

2.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 재학 연한 내에서 논문연장등록 후 학위 취득을 하지 못해, 계속적으로 학위청구 논문 준비를 위해 학교시설 이용을 위한 수료연구등록은 본인이 매 학기 신청하여 납부한다.

⑤ 영구수료특례재입학 및 논문포기대체학점(재학연한이 초과하지 않은 수료자 해당) 재입학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제6장, 제7장에 따른다.

제14조(휴학) ① 평택대학교 대학원학칙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휴학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휴학 : 질병 및 가사, 임신·육아·출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휴학

2. 군 입영(복무)휴학 :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하는 휴학

③ 휴학원서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휴학 : 매학기 등록기간 내 또는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에 학기별로 휴학원서 제출

2. 군 입영(복무)휴학 : 군 입영(복무)일이 속한 학기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복무) 전 휴학원서 제출(입영일이 종강 이후인 경우 종강일 이후에 휴학원서 제출, 일반휴학 기간 중 군 입영할 경우 반드시 군 입영(복무) 휴학으로 전환)

④ 휴학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정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휴학원서(소정양식)

2. 질병으로 인한 휴학 : 국.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

3. 군 입영(복무) 휴학 : 입영 관련 (복무)확인서

4. 임신·출산·육아 휴학

- 임신·출산 휴학 :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때(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 육아 휴학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⑤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하되 연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 입영은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부기간으로 하며 및 임신·출산·육아휴학,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⑥ 학기 중 휴학한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하며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병역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휴학자 및 질병휴학은 수업일수 2/3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중간시험 성적과 기타 학기말 시험 대치가능 성적 등을 합산하여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⑦ 신입생은 입학 후 1학기 종료까지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병역, 임신·출산·육아, 질병 및 학생의 직장 이동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⑧ 유급자 및 편입생들의 입학 첫 학기에는 가사로 인한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⑨ 일반휴학자는 휴학원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 ⑩ 군 입영 휴학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 귀향조치 1주일 이내에 휴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이 4주 이상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복학) ① 휴학자의 복학은 매 학기 개시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복학원이나 연기원의 제출이 없는 자는 학업의 계속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적처리할 수 있다.
- ③ 군 입영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16조(자퇴)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해당 학기 중의 자퇴는 그 학점과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17조(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 1.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3. 재학연한 이내에 소정의 학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4.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 5. 학위를 수여 받았으나 학위가 취소된 자(학력 및 경력 위조 등)
- 6. 논문포기대체학점(재학연한 초과하지 않은 수료자 재입학 경우만 해당), 영구수료특례 재입학자의 제적에 관한 사항은 제6장, 제7장에 따름
- 7. 사유없이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초과하여 무단 결석하는 자
- 8. 기타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결의된 자

제4장 교육과정, 수업 및 수강

제18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과정 편성은 학과(전공) 신설에 따른 교육과정 신설과 기존 교육과정 개편 시 실시한다.

- ② 각 대학원별 교과목은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선수과목,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19조(교육과정 편성 절차) ① 교육과정 개편은 2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 교육정책의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편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별 주임교수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에 제출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③ 확정된 교육과정은 공표한다.

제20조(학점수) ① 교과목은 학점당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교과목당 학점은 2학점 또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수업) ①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계절학기 수업을 할 수 있다.

③ 휴강이 불가피할 경우 보강을 통해 15주 이상 수업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사유로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대학원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평일 주야간 및 주말수업, 원격수업, 집중수업, 현장실습수업,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삭제(2025.10.23.)

제22조(출석 및 결석) ① 출석 인정은 아래 호의 사유에 결석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

1. 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처, 자식 등)의 사망으로 인한 5일 이내
2. 병사관계(신체검사 등)로 인하여 병무청장이 발행한 통지서가 있을 때의 소요 전일수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동원된 자
4. 교육 또는 전공 관련 실습 기간은 해당 기간
5. 본인의 결혼(공휴일 포함) : 7일

② 결석은 정상수업시간(학교행사 포함) 강의 중 퇴실하거나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질병, 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장기결석을 할 때 그 사유를 적어 주임교수를 경유, 대학원장에게 유계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23조(수강신청) ① 매 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업시간이 중복되거나 기 취득한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과목이 폐강 또는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 할 때는 일정기간 내에 공고하여 정정하게 한다.

④ 한 학기 수강 권장 학점과 최대 수강신청 학점은 아래 표와 같다. 사회복지대학원은 직전학기 성적이 4.0 이상일 때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서 한 과목에 한하여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

대학원별	학위구분	권장 수강신청 학점	최대 수강신청 학점
대학원	박사	6학점 이내	9학점
	석사	6학점 이내	9학점
	석사(음악치료)	9학점 이내	12학점
피어선신학 전문대학원	박사(Ph.D.)	6학점 이내	9학점
	석사 (Th.M., M.A.)	6학점 이내	9학점
	석사(M.T.S.)	12학점 이내	15학점
	석사(M.Div.)	18학점 이내	21학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6학점 이내	9학점
상담대학원	석사	6학점 이내	9학점
글로벌비즈니스대학원	석사	6학점 이내	9학점
통번역대학원	석사	6학점 이내	9학점
국가안보대학원	석사	6학점 이내	9학점
AI융합대학원	석사	6학점 이내	9학점

⑤ 수강신청한 과목을 절차 없이 학기중에 포기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한다.

⑥ 본교 학부 학생 중에서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동일학과 또는 동일전공과정에서 수업을 요청하는 학생에게는 6학점 까지 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⑦ 협약 및 계약에 의해 수업연한을 1년(2학기) 이내 단축하여 운영하는 석사학위 과정과 6개월(1학기) 이내 단축하여 운영하는 박사학위 과정에 신입학한 학생의 경우 졸업이수 기준 학점을 고려하여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 학점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⑧ 각 대학원 재학생 중 논문작성을 위한 마지막 학차는 졸업이수 기준 학점을 충족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24조(분반) 분반 대상 과목은 수강 인원이 40명 이상일 경우 분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반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는 그 사유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후에 분반한다.

제25조(폐강) ① 폐강은 교과목당 3명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합반(강사료 미적용) 수업은 총 수강인원을 적용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전공필수 및 논문교과목, 자격증 필수과목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의 경우 폐강하지 아니한다.

제26조(계절학기) ① 계절학기는 하계방학과 동계 방학 중 실시한다.

② 교과목 개설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 ③ 정규학기 수업 기준(수업운영, 학점 및 성적 부여, 폐강기준 등)을 준용한다.
- ④ 계절학기 개강 이후의 수강정정 및 취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정정 및 취소가 가능하다.
- ⑤ 수강료는 당해 학년도 수강료 기준에 따르며, 계절학기가 개강한 이후의 수강료의 반환은 불가하다.
- ⑥ 계절학기의 담당교원에 대한 강사료는 당해 학년도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수강료 수입보다 강사료 지출이 큰 경우 등록 학생의 수강료 수입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한다.

제5장 교과이수, 취득학점, 성적평가

제27조(교과이수 및 취득학점) ① 각 대학원 및 학과(전공)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시험 및 취득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5.10.23.)

1. 대학원

가. 2020학번 이후

1) 박사과정

학 과	전공 필수	전공 선택	논문 교과목	논문 자격시험	논문	총 이수학점
사회복지학과	3	33	논문 연구 I	P	P	36
상담학과						
아동청소년학과						
국제물류학과						
부동산학과						
AI융합학과						
환경융합공학과						

※ “논문연구I” 교과목을 필수 이수하고 논문을 통과해야 졸업

2) 석사과정

학 과	전공 필수	전공 선택	논문 교과목	종합 시험	논문	총 이수학점
사회복지학과	3	21	논문연구	P	P	24
상담학과						
아동청소년학과						
음악학과						
부동산학과						
환경융합공학과						

※ “논문연구” 교과목을 필수 이수(논문포기대체학점 신청자 제외)하고 논문을 통과해야 졸업

※ 음악학과는 졸업연주, 졸업작품으로 종합시험 대체 가능

※ 논문포기대체학점 신청자 : 6학점 추가 이수, 종합시험 통과한 후 졸업

나. 2020학번 이전

1) 박사과정

학 과	전공 필수	전공 선택	논문 교과목	논문 자격시험	논문	총 이수학점
사회복지학과	3	33	논문 연구 I	P	P	36
상담학과						
아동청소년학과						
국제물류학과						

※ “논문연구I” 교과목을 필수 이수하고 논문을 통과해야 졸업

2) 석사과정

학 과	전공 필수	전공 선택	논문 교과목	종합 시험	논문	총 이수학점
사회복지학과	3	21	논문연구	P	P	24
상담학과	3	21				
아동청소년학과	3	21				

※ “논문연구” 교과목을 필수 이수(논문포기대체학점 신청자 제외)하고 논문을 통과해야 졸업

※ 논문포기대체학점 신청자 : 6학점 추가 이수, 종합시험 통과한 후 졸업

2.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가. 박사과정

1) 2020학번 이후

학과/전공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전공 실습	논문 교과목	논문 자격시험	논문	총 이수학점
신학과 (Ph.D.)	구약	24	12	/	논문 작성법	P	P	36
	신약							
	조직							
	역사							
	실천							
	상담	30	6					
신학과 (Ph.D.) 외국인	구약,신약 조직,역사 실천,상담	18	18	/				

※ 철학박사과정(Ph.D.)은 모든 전공자는 전공선택 12학점 이수 시에 본인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 영역에서 1과목씩 모두 4과목을 균형 있게 수강해야 한다.(상담학 전공자 제외)

※ 철학박사과정(Ph.D.)의 구약신학전공, 신약신학전공자는 2과목에 한해 상호 교차수강이 가능하며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철학박사과정(Ph.D.) 외국인 유학생은 유사전공 과목 안에서 상호 교차수강이 가능하며 전

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유사전공: 조직신학과 역사신학, 실천신학과 상담학, 구약신학과 신약신학)

- ※ 철학박사과정(Ph.D.) 지원자 중 신학전공 학사 또는 석사학위가 없는 자는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본인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전공(구약, 신약, 조직, 역사, 실천)에서 각각 1과목씩, 모두 4과목, 도합 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 석,박사과정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석,박사과정의 과목들을 학점에 제한 없이 교차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2020학번 이전

학과/전공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전공 실습	논문 교과목	논문 자격시험	논문	총 이수학점
신학과 (Ph.D.)	구약	24	12		논문 작성법	P	P	36
	신약							
	조직							
	역사							
	실천	30	6					
	상담							
신학과 (Th.D.)	성경적설교	24	6	6				
	성경적상담	21	9	6				
	목회	24	12					
신학과 (Ph.D.) 외국인	구약,신약 조직,역사 실천,상담	18	18					

- ※ 철학박사과정(Ph.D.)은 모든 전공자는 전공선택 12학점 이수 시에 본인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 영역에서 1과목씩 모두 4과목을 균형 있게 수강해야 한다.(상담학 전공자 제외)
- ※ 철학박사과정(Ph.D.)의 구약신학전공, 신약신학전공자는 2과목에 한해 상호 교차수강이 가능하며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철학박사과정(Ph.D.) 외국인 유학생은 유사전공 과목 안에서 상호 교차수강이 가능하며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유사전공: 조직신학과 역사신학, 실천신학과 상담학, 구약신학과 신약신학)
- ※ 철학박사과정(Ph.D.) 지원자 중 신학전공 학사 또는 석사학위가 없는 자는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본인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전공(구약, 신약, 조직, 역사, 실천)에서 각각 1과목씩, 모두 4과목, 도합 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석사 및 박사과정의 과목들을 학점에 제한 없이 교차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석사과정

1) Th.M.

전공	전공 필수	전공 선택	논문 교과목	종합 시험	논문	총 이수학점
구약	9	15	논문	P	P	24

신약			작성법			
조직						
역사						
실천						

※ “논문작성법” 교과목을 필수 이수하고 논문을 통과해야 졸업

※ Th.M 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Ph.D 과목 수강 가능

※ 논문포기대체학점 신청자 : 6학점 추가 이수, 종합시험 통과한 후 졸업

2) M.T.S.

- 2020학번 이후

전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경건실천	성서종합시험	종합시험	총 이수학점
신학	12	18	4학기	P	P	30
상담학			1학기			
기독교세계관			4학기	P		
스피치리더십			1학기			

- 2016학번 이후 ~ 2020학번 이전

전공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경건 실천	성서종합 시험	종합 시험	총 이수학점
신학	12	18	4학기	P	P	30(6)
CCM			1학기			
상담학			1학기			
성경적설교학			2학기	P		

※ M.div. 학위 소지 목회자(구세군 사관포함)는 성서종합시험 면제

- 2016학번 이전

전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선수과목	경건실천	성서종합시험	종합시험	총 이수학점
일반신학	구약	3	15	30	(6)	P (매학기)	P	P	45(6)
	신약	3							
	조직	3							
	역사	3							
	실천	3							

※ 선수과목 = 히브리어, 헬라어

※ 논문선택 이수자 : “논문작성법” 교과목 필수 이수, 논문 통과 시 전공선택 6학점 인정

3) M.A.

• 2020학번 이후

전공	전공 필수	전공 선택	논문 교과목	종합 시험	논문	총 이수학점
신학	12	12	논문 작성법 P	P	P	24

※ “논문작성법” 교과목을 필수 이수하고 논문을 통과해야 졸업

※ 논문포기대체학점 신청자 : 6학점 추가 이수, 종합시험 통과한 후 졸업

• 2020학번 이전

전공	전공 필수	전공 선택	논문 교과목	종합 시험	논문	총 이수학점
신학	12	12	논문 작성법 P	P	P	24
기독교교육						
목회상담						
다문화선교						
평신도성경연구						

※ “논문작성법” 교과목을 필수 이수하고 논문을 통과해야 졸업

※ 논문포기대체학점 신청자 : 6학점 추가 이수, 종합시험 통과한 후 졸업

4) M.Div.

전공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선수 과목	경건 실천	성서 종합시험	종합 시험	총 이수학점
목회학	39 (목회실습 6학점포함)		51	(6)	P (6학기)	P	P	90(6)
목회학 (외국인)	구약	6						84(6)
	신약	6						
	조직	6						
	역사	6						
	실천	9						

※ 선수과목 = 히브리어, 헬라어

※ 논문선택 이수자 : “논문작성법” 교과목 필수 이수, 논문 통과 시 전공선택 6학점 인정

※ 전과나 편입시 “목회실습”, “경건실천” 이수 횟수는 해당 학기부터 적용

3. 특수대학원

가. 2020학번 이후

대학원	학 과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종합 시험	총 이수학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30	P	30
	아동청소년복지학과				
상담대학원	상담학과				
	미술치료학과				
글로벌 비즈니스대학원	국제물류학과				
	국제무역학과				
	경영학과				
통번역대학원	통번역학과				
	한국어교육학과				
국가안보대학원	국가안보학과				
AI융합대학원	AI융합학과				

※ 논문선택 이수자 : “논문작성법” 교과목 필수 이수, 논문 통과 시 전공선택 6학점 인정

나. 2020학번 이전

대학원	학 과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종합 시험	총 이수학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30	P	30
	아동청소년복지학과				
상담대학원	상담학과				
	미술치료학과				
물류·정보·경영 대학원	국제물류학과				
	국제무역학과				
	부동산경영관리학과				
	컴퓨터·정보통신학과				
	경영학과				
문화·예술융합 대학원	음악학과				
	디자인학과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실용음악학과				
통번역대학원	통번역학과				
	한국어교육학과				

- ※ 논문선택 이수자 : “논문작성법” 교과목 필수 이수, 논문 통과 시 전공선택 6학점 인정
- ※ 음악학과는 졸업연주, 졸업작품을 통해 종합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② 소속학과의 사정으로 과목 이수구분이 변경되거나 학생이 이수한 과목 중 이수 구분을 변경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학과 회의를 통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28조(전공선수과목)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신학과(M.Div.) 전공자는 전공선수과목(히브리어 3학점, 헬라어 3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대학, 대학원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에 준하는 기관에서 3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수강한 자로서 과목의 성적이 평점 3.0/4.5이상 또는 80/100점 이상일 때 이를 선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9조(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중간시험, 기말시험, 출석, 과제물, 세미나 등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A ⁺	A	B ⁺	B	C ⁺	C	F	I	P	N
점수	100 -95	94 -90	89 -85	84 -80	79 -75	74 -70	69 이하	미완	통과	미통과
평점	4.5	4.0	3.5	3.0	2.5	2.0	0			

- ③ 불가피한 사유로 과목의 의무를 소정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을 경우는 미완 'I'(Incomplete) 등급을 줄 수 있다. 미완은 성적정정 기간 내에 확정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적정정 기간 내에 성적이 평가되지 않으면 미완은 'F' 등급으로 간주한다.
- ④ 평점 2.0이상(C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⑤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자는 학점('P' 등급 포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0조(성적산출방법) ① 성적 산출은 교과목별로 성적 평가 기준에 따라 성적 등급을 산정한다.

② 평점평균 산출 방법은 과목별 성적의 평점을 학점수로 곱한 수치를 평점이라 하며 전체 과목의 평점을 합하여 수강신청 총 학점수로 나누면 전체의 평균평점이 된다.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다.

$$\frac{(\text{과목별 성적의 평점} \times \text{과목별 학점수}) \text{의 합계}}{\text{수강신청 총 학점수}}$$

- ③ 평균평점 산출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④ 'P' 등급은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지만 평균평점 계산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31조(교환수강 및 학점교환)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직전 학기 성적이 'B+' 이상인 자에 한하여 박사과정의 과목을 한 학기에 1과목씩 졸업 시까지 총 3과목 이내로 수강할 수 있고 졸업학점에도 포함된다.

②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필요시에 석사과정의 과목을 한 학

기에 1과목씩 졸업 시까지 3과목 이내로 수강할 수 있다. 단,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각 대학원은 필요시 한 학기당 3학점씩 총 9학점까지 학점을 교환 수강할 수 있고 졸업학점에도 포함된다.

제6장 영구수료자 특례 재입학

제32조(특례 재입학) 각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재학연한 초과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영구수료자에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재입학 기회를 부여하여 학위를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자격) ① 본교 대학원 과정에서 재학연한이 경과된 자로 특례 재입학을 지원한 자로 한다.

② 특례 재입학을 지원한 자가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미등록 포함)에는 추후에 다시 재입학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특례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개강 2주 이전에 특례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례 재입학자가 특례 기간 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또는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추후에 다시 특례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제34조(선발 우선순위) 영구수료자 특례 재입학은 편입생 및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재입학생(논문포기 대체학점 이수자 포함) 모집 후 여석으로 선발한다.

제35조(등록 및 기간) ① 특례 재입학 대상자로 허가된 자는 당해 학기의 재입학금 전액과 수업료의 10%를 납부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납부금으로 논문심사비 등을 별도 소정의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례 재입학 석사과정은 재입학한 학기부터 1년(2학기), 박사과정은 재입학한 학기부터 2년(4학기)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단,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은 입학한 학기부터 4년(8학기)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③ 특례 재입학 다음 학기부터는 재입학금을 제외한 해당 학위과정 수업료의 10%를 특례기간 동안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특례기간 동안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거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영구수료를 확정한다.

제36조(논문지도) 재학당시 논문 지도교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경 시에는 소속 학과 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7장 논문포기 대체학점 이수

제37조(논문포기 대체학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M.A., Th.M.) 학생은 논문을 대체하고자 할 경우, 졸업요구학점 외로 논문 대체학점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제38조(자격) ①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M.A., Th.M.) 재학생
② 재학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자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M.A., Th.M.) 학생 중 논문을 이수하지 않은 수료생
③ 위 제1항,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논문을 포기하고 학점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논문포기 대체학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재학생은 3, 4 학차에서만 신청서 제출이 가능)

제39조(재학생 등록 및 대체학점 이수) ① 재학생의 경우 논문 대체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별도의 등록비 납부는 없으며, 졸업요구학점 외로 논문 대체학점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② 논문포기 대체학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취득한 학점도 논문 대체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0조(수료자 등록 및 대체학점 이수) ① 수료자의 경우 당해 학기의 등록금(수업료)에 준하는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금 지급 규정에 준하여 등록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② 수료자의 경우 논문포기 대체학점 신청 이후 논문 대체학점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③ 논문 대체학점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지 못한 자가 추후 영구수료 특례 재입학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논문을 이수하여야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석사논문 대체학점 이수 불인정)

제8장 종합시험, 성서종합시험, 논문자격시험

제41조(시험) 종합시험, 성서종합시험, 논문자격시험으로 구분하며 시험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학원학위수여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응시방법) 종합시험, 성서종합시험, 논문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생은 기일내에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3조(응시자격) ① 종합시험, 성서종합시험, 논문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각 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에 한한다.
② 종합시험은 석사과정학생에 한하여 실시하며 논문자격시험은 박사과정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은 성서종합시험(해당 전공에 한함)에 합격 후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4조(시험시기) ① 종합시험 및 논문자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서종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합격인정) ① 종합시험 및 논문자격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성서종합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6조(재응시)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회수에 관계없이 재응시 할 수 있다.

제9장 학위청구논문

제47조(학위청구논문) 학위논문제출자격, 논문지도, 절차 및 시기, 논문심사 및 판정, 논문제출, 논문양식 및 작성지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및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규정’ 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99년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1. 은 1999-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0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0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폐지 및 승계) 본 개정 시행세칙 시행과 관련하여 본 대학원 규정 중 편입학에 관한 규정, 재입학에 관한 규정, 전과 및 전공변경에 관한 규정, 휴학 및 복학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며,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승계한다.

제3조(시행) 본 개정 시행세칙 제19조(입학무효)는 삭제하여 제5조 제2항으로 표시하고, 제17조(재입학) 삭제하여 제5조의3(재입학)으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6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정의 목회학 박사 (D. Min) 과정은 2013년2월13일자로 폐지하며 모든 규정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0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전부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편입학 가능학기 및 학점인정 범위(개정 2025.10.23.)

대학원	학위	학 과	전 공		학기	인 정	
대학원	박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2 3 4	6학점 이내 12학점 이내 18학점 이내	
		상담학과	상담				
		아동청소년학과	아동, 청소년				
		국제물류학과	국제물류				
		부동산학과	부동산				
		AI융합학과	AI융합				
		환경융합공학과	환경융합공학				
	석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2 3	6학점 이내 12학점 이내	
		아동청소년학과	청소년, 영유아교육·보육				
		상담학과	상담, 미술치료				
		음악학과	연주(관현악, 성악, 피아노), 음악치료				
		부동산학과	부동산				
		환경융합공학과	환경융합공학				
피어선 신학 전문 대학원	박사	신학과	(Ph.D.)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상담학	2 3 4	6학점 이내 12학점 이내 18학점 이내	
	석사	신학과	(Th.M.)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2 3	6학점 이내 12학점 이내	
			(M.A.)	신학			
			(M.T.S.)	신학, 상담학, 기독교세계관, 스피치리더십	2 3 4	15학점 이내 30학점 이내 45학점 이내	
			(M.Div.)	목회학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	노인·기관운영, 다문화, 재활상담, 동물매개치료		2 3	6학점 이내 12학점 이내
			아동청소년복지학과	청소년, 영유아교육·보육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원	국제물류학과		국제물류, 물류경영				
국제무역학과	국제경제, 국제경영, 무역경영						
경영학과	경영학						
상담 대학원	미술치료학과		미술치료				
	상담학과		가족상담,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중독상담, 위기상 담, 군상담, 독서치료, 놀이치료, 코칭서비스상담				
통번역 대학원	통번역학과		한영통번역				
	한국어교육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국가안보 대학원	국가안보학과		국가안보, 공공안전				
AI융합 대학원	AI융합학과		AI융합, AI가상자산				